

## 변론의 녹취(속기) 신청

사건 2005 나 84701 교수지위확인(서울고법 민사 제2부 나, 박홍우 부장판사)  
원고 김명호,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415, 중앙하이츠빌 105동 1504호  
(휴대폰: 010-5590-8913)  
피고 학교법인 성균관 대학,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53 이사장 권이혁

위 당사자간 2005 나 84701 교수지위확인청구 사건에 관하여,  
법정 내에서의 거짓말들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목적 및 사실관계의 정확성 및 박  
홍우 재판장의 재판진행 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변론기일에서의 변론 전부를 녹취  
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신청 사유

1. 대법원 재판 예규에(법정녹음장치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송일 81-7)(송일 83-2) 의하면,

제 목: 공포일 1981.11.16  
제정 81.11.16. 송무심의 제 49 호  
83.8. 1 송무심의 제 65 호  
개정 88.5. 4 민사 제 556 호

“종래 각급법원에서 변론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증인신문 등을 행한 후 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담당법관 또는 참여법원사무관 등의 기억 및 법정에서 기록한 간단한 메모에만 의존하여 왔기 때문에 조서기재의 정확성이 보장되지 못하여 조서의 내용을 들려싸고 조서작성자와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생길 뿐만 아니라 증인 등이 억울하게 위증 등의 책임을 지게 되는 사례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나가면서, 사실심에 있어서의 사실인정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각급법원의 126 개 법정중 금년말까지 84 개 법정, 내년도에 나머지 법정에 각 녹음장치를 설치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법정녹음장치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니 각급법원에서는 동 지침에 의하여 법정녹음장치를 운용함으로써 조서작성사무의 개선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 민사소송법 제 159 조(변론의 속기와 녹음)
3. 2006년 4월 7일, 5월 12일, 5월 26일 자 변론조서가 실제 변론사실과 다  
름

2006. 7. 21

위 원고 김명호



서울고등법원(민사 제 2 부 나) 귀 중